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010. 12. 31
[규칙 제175호]

일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5. 5. 8 규칙 제266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7. 6. 30 규칙 제32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0. 5. 8 규칙 제37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증평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증평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제4조(각종 대장 등의 비치·작성·관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 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충청북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 5. 8>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26>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8>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령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리인 선정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8]

제13조(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8]

제14조(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재·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재·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8]

부칙(2017. 6. 30 규칙 제3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별지 제5호서식 (2면)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중 “제9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별지 제99호 서식”을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제105조”를 “제79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1면) 중 “128조”를 “제101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1면) 중 “제47조제2호”를 “제46조제2호”로 한다.

② 증평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한다.

③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증평군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지방세법」 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제5항”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8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별지 제1호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별지 제2호	송달부(교부)	
별지 제3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송달불능부	
별지 제5호	지방세 부과취소(경정)결의서	
별지 제6호	지방세 부과취소·결정처분 내역	
별지 제7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별지 제8호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별지 제9호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별지 제10호	증평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	
별지 제11호	증평군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	
별지 제12호	증평군 선정 대리인 지정 명세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illegible]

– 918 –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6>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 장	분임징수관	징수관

부과취소(변경)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변경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변경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군세 취소·변경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26〉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illegible][illegible]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 증평균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세	세	세	세
일련 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 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 당 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 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 5. 8>

증평군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귀하

1.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증평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증평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대리인 용

○증평군 선정 대리인: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증평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 인
생 략

